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납세자가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면제 대상 가산세 - <u>무신고 가산세</u> - 과소신고 가산세 - <u>(신 설)</u>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산세 종류 보완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면제 대상 가산세 - <u>(삭 제)</u> - <u>(좌 동)</u> - <u>납부지연 가산세</u>
<input type="checkbox"/> 수정신고 대상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시가인정액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명확화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시가인정액,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

□ 개정내용

- 최초 취득신고 시 시가인정액 등*으로 신고한 이후 정확한 시가인정액으로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
 - *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을 적용(§10의2①)하되,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(§10의2②3호)
- 종전 규정에 별도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규정이 없으나 지침에 따라 면제하는 것으로 운영 중인 사항을 명문화
 - * 납부지연가산세도 가산세 감면의 '정당한 사유'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과하지 않음
 - 또한, 최초에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어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후 시가인정액을 확인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도 명확히 규정

※ 실무상 업무 지침에 따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한 경우에 수정신고 가능

□ 적용요령

- 개정 규정은 현행 운영을 명확화한 사항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